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1. 27 선고 2022가단424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하남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경남

변 론 종 결 2022. 12. 16.

판 결 선 고 2023. 1. 2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B 소유 계좌(C은행 (계좌번호 1 생략))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하고, 원고가 위 계좌로 잘못 송금한 580만 원의 출금에 동의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8. 31. 580만 원을 B의 청구취지 기재 계좌(이하 '이 사건 계좌'라 한다)로 착오로 송금하였다.

나. 피고는 B이 자동차세 등 134,879,140원을 체납하자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. 7. 28. 이 사건 계좌에 관한 B의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압류'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580만 원을 잘못 송금하여 이를 은행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것과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580만 원을 출금하는 데 동의할 것을 구한다.

나. 판단

1) 관련 법리

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,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,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,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,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,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.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,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,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

참조).

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,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,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,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).

2) 구체적인 판단

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580만 원을 이체한 때에 B과 C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여 B은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.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, 피고가 B의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거나 원고의 위 580만 원의 출금에 동의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희경